

식품포장재질 표시

Food Packaging Resource Symbol

식품공업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7조제1항(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식품·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제9조제1항(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과 기구, 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과 제10조제1항(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 또는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와 용기 포장의 표시에 관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생물의 유전자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수록한 식품 등의 공전을 작성 보급하여야 한다.

1. 목적

식품위생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이 목적이다.

2. 표시대상

2-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①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②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 업소내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의 규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하여 제조 가공하는 식품

- 2) 방사선으로 조사 처리한 식품
- 3) 수입식품 또는 수입 식품첨가물
- 4) 용기·포장에 넣어진 식품 또는 수입된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로서 용기·포장에 넣어진 것

5) 감미료·착색료·보존료·표백제 등의 식품첨가물

6) 동·식물로부터 추출한 단일성분의 천연첨가물, 국·종국 또는 첨가물의 혼합 제제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7)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판매 품목

8) 합성수지제의 용기·포장에 있어서는 재질에 따라 염화비닐수지·폴리에틸렌·불소처리된 폴리에틸렌·폴리스틸렌·폴리염화비닐리덴·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페놀수지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한다.

9) 원재료명(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재질로 표시한다)은 제품명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품의 제조·가공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재질) 표시란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단 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7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10) 식품포장용 랩 : 제조에 사용하는 주원료 명칭 및 가소제, 안정제, 산화방지제 등의 첨가제 명칭과 다음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단 식품포장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100℃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사용해야 하고 100℃를 초과하는 고열에 내열성이 있는 재질

로 만든 제품은 그 내열온도를 표시하고 그 안전사항을 식품위생검사 기관이 인정해야 한다.

11) 회수병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공병보증금환불에 관한 사항을 용기 또는 병마개에 잘 보이도록 표시한다.

2-2. 제외

1) 식품의 보존을 위하여 비닐랩(wrap)등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소포장 한 것

2)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한 식품을 진열 판매하는 경우로서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시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예 : 크라운베이커리, 일반상가 빵집 등에서 즉석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 등).

3) 그러나 일반적으로 직접 구입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다. 예를 들어 통·병조림 및 병 제품의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인쇄된 라벨을 부착한다.

4) 절임식품(단무지에 한한다), 두부류·묵류의 경우에는 업소명 및 소재지만을 표시하고 다른 표시사항은 제외한다.

3. 표시방법

1)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일정장소에 일괄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사항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3)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① 주표시면(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에 글자크기 12포인트 이상. 단, 찌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7포인트 이상으로 기입한다. ② 일정장소에 일괄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사항 제4조 제8호에 나온 원재료명(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재질로 표시한다)은 7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4) 표시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한글로 하여야 하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는 혼용하거나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표시 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단, 수입되는 식품 등과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는 외국어를 한글표시 활자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다.

5) 용기나 포장은 다른 제조업소의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단, 식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용기로서 일반시중에 유통 판매할 목적이 아닌 다른 회사의 제품원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시할 수도 있다.

4. 수입식품 등에 대한 표시방법

1)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 등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고,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원래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영양표시 등 주요표시 사항을 가려서는 안된다. 단,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에

로 포장하여 수입되는 식품 등의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수출국 및 제조회사의 표시는 한글표시 스티커에 당해 제품 수출국의 언어로 표시해야 한다.

3)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사항을 주표시면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글표시 스티커에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수입되는 식품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용기·포장에 넣어지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 ② 자사의 제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식품 등 단,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원래의 용기·포장 또는 라벨에 제조업소명과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 등 단,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국내 공급시 업소명 소재지와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예외

1)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납세 병마개 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인 활자크기 12포인트 이상, 7포인트 이상, 일괄장소 등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2)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적은 내포장된 건과류 및 캔디류, 초콜릿류, 껌류는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제품의 최소 유통 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할 수 있다. ☞